

# 예산총칙

2021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33,786,853	13,013,606
일반회계	420,289,952	12,608,699
특별회계	13,496,901	404,907
기타특별회계	13,496,901	404,907
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	78	2
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	3,481,128	104,434
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	1,840,460	55,214
건축진흥특별회계	50,000	1,500
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	83,801	2,514
상수도특별회계	4,557,678	136,730
수질개선특별회계	95,284	2,859
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	2,557,165	76,715
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	831,307	24,93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209,965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4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